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김혜영 의원

나. 의안번호: 제782호

다. 발의일자: 2023. 5. 30.

라. 회부일자: 2023. 6. 5.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목표 규정(안 제2조).

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이행 노력 의무 규정(안 제7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8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검 토 의 견

가. 개 요

○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및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1].

ESG란 용어는 2004년 UN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개념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지속가능성이 추상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ESG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측정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ESG라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2].

최근 들어 기업의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22.5.6.)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s://bjfez.go.kr/kor/01866/01856/01808.web)
2)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의 법적 리스크 검토(양영식, 23.3.12.)

기본원칙,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는 기본계획, 제7조와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실태조사, 인센티브,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ESG 경영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내 용
제1조(목적)~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 목적: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기본원칙: 인권보호, 건전한 거버넌스 도입, 사회적 책임, 안전, 기후위기 대응, 환경오염 예방, 노동권 보장, 사회통합 구축, 건강한 보건복지,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등 - ESG 경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 시장의 책무: ESG경영 활성화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 : ESG경영 추진 방향 제시, 운영지침 마련, 효율적 성과관리
제6조 (기본계획)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5년주기)
제7조 (공공기관 ESG경영 활성화)	조직 정비, 시책 수립/시행/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제8조 (ESG경영 활성화 지원)	홍보/교육, 경영 진단/전략 수립, 컨설팅/법률 상담 우수기관 발굴등
제9조(실태조사)~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 실태조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우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정부, 타지자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12조 (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총칙 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별 법령별로 다양하지만, 보통 목적 규정, 용어 정의 규정, 법령 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 규정, 적용 범위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기본이념, 책무 등의 사항을 총칙 규정에 두는 경우가 많으며[3], 본 조례안의 체계는 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

○ 안 제6조는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7조는 시,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 시책 수립·시행·평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을 명시한 것임.

안 제8조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교육, 경영 진단·전략 수립, 전문가 컨설팅·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실태조사, 인센티브,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2)'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안의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환경 분야 외에도 인권, 윤리경영, 노동권 보장,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등 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책 수립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실·국을 기후환경본부보다 기획조정실 또는 경제정책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3) 2022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2)

ESG 경영 관련 조례는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대부분 경제 관련 실·국이 담당하고 있음.

○ 아울러 ESG란 용어는 지속가능성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개요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본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 내용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조례제정에 앞서 이를 수정·통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타 지방자치단체 ESG 경영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담당 실·국
1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경제창업실
2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경제통상국
3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산업경제실
4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03.03.	경제산업국
5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7.19.	사회적경제국
6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기업유치지원실
7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29.	경제국
8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경제국
9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3.05.17.	디지털경영혁신실